2004. 7. 30 (금) 제8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심사보고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비 기채승인 안

사 천 시 의 회 (산업건설위원회)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비 기채승인 안」 심사보고

제8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4.7.29)

1. 심사경과

가. 2004. 7. 6 : 사천시장 제출

나. 2004. 7. 8 : 산업건설위원회 회부(의안번호 제27호)

다. 2004. 7. 29 : 제8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가. 제안사유

○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의 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중 국고부담분(70%)에 대하여 환경부 『환경개선 특별회계』기금을 융자받아 부담코자 함.

나.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15조,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4조2항

다. 주요골자

-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중 국고부담분(70%) 에 대하여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기금을 우선 융자받아 충당하고, 원리금상환은 국고보조로 지원받는 제도임
-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사업계획
 - 위치 : 사등동 114-1(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내)

- 시설용량 : 20톤/일

- 사업기간 : 2004. ~ 2006. 8

- 총사업비 : 2,900백만원

○ 재원별 투자계획

사업명	총사업비					
	합계	지방비	국고융자			비고
			소계	2004년 융자액	2005년 이후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	2,900	870	2,030	651	1,379	

- 금회 기채승인 신청액: 651백만원
- 융자금 상환조건
 - 상환년도 : 2010년~2019년도(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 이 윤 : 연리3.63%(변동금리)
 - 상환재원 : 환경부 국고보조금(이자포함) 지원
 - 차 입 선 : 환경부(환특자금:환경개선특별회계)
- 지방채발행승인 : 2004. 6.25(경상남도지사)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영태)

○ 재원별, 년도별 투자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비고			
ਹਿੱਦ	계	2004년	2005년 이후	□ <u>-</u>	
계	2,900	930	1,970		
국고융자(70%)	2,030	651	1,379		
지 방 비(30%)	870	279	591		
-도비(15%)	435	139	296		
-시비(15%)	435	140	295		

- 본 기채승인(안)은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내(사등동 114-1 번지상)에 시설용량 1일 20톤 규모의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2004년도부터 2006년 8월까지 2,900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 총 사업비 2,900백만원 중 국고융자금(환경부환경개선특별회계자금)이 2,030백만원(70%), 지방비가 870백만원(30%)으로 국고융자금은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우선 차입하여 사업시행하고 상환은 원리금을 포함하여 국고보조금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 2004년도 투자사업비 930백만원 중
 - 국고융자금 651백만원에 대하여는 2003년 4월 30일자로 2004년도 환경부소관 국고보조사업계획을 경상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2004년 1월17일 2004년도 하수도사업 예산을 확정통보 받아 사업계획이 확정 되어 2004년도 지방채 발행액 651백만원에 대한 2004년도 이자 10,870천원(6개월분)이 국고(양여금)보조금으로 교부결정 및 교부되었으며.
 - 또한 지방비 부담분 279백만원(도비 139, 시비 140)은 하수 슬러지처리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비로 200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2004년 5월 7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호계동 1048-2 (주)건화엔지니어링(대표 문병권)과 처리시설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을 27,100천원에 체결하여 2004년 5월 7일 착수, 2004년 8월 4일 준공기한으로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음.
 - 2004년 6월 7일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의 하수도사업예산 조기집행 공문을 통하여 2004년도 투자사업비 집행을 촉구한 바 있어 2004년도 사업비확보 등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행정절차 관계

- 투·융자사업비 500백만원 이상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년차별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계획적인 투자로 사업 추진 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하나
- 2003년 3월 11일자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환경부의 하수슬러지 처리사업 추진대책이 시달되어 우리시에서는 환경부소관 국고

보조사업으로 2003년 4월 30일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계획을 경상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2004년 1월 17일자로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04년도 하수도사업 예산이 통보됨으로써 2003년도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하지 못하고.

- 2004년 3월 20일 우리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자체심사를 거처 2004년 3월 30일자로 2004년도 수시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신청으로 2004년 6월 25일 경상남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사항으로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음.

○ 종합의견

- 투·융자사업비 500백만원 이상은 사전 년차별 추진계획수립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 예산의 효율적 배분으로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의거 예산확보는 물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나 중앙정부의 사업확정 내시 지연으로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치 못 하였으므로 2004년도 계획에 추가 반영토록하고,
- 동 기채사업비는 국고보조금으로 원리금을 상환토록 되어 있어 우리시의 자체재정부담은 없으므로 지방채발행 승인된 651백만원에 대하여 기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4.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답 변		
질의자	질의요지	답변자	답변요지	
이연성	■ 현재 발생하고 있는 하수	하 수 도	■ 현재 하수슬러지 발생량은	
위 원	슬러지는 어떻게 처리하고	사업소장	- 1일 14톤으로 삼천포처리장	
	있는지?	천 병 기	8톤, 사천처리장 6톤임	
			- 2003.7.1부터 하수처리량이	
			1만톤 이상일 때에는 육상	
			매립이 불가하여 우리시는	
			폐기물처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해상투기를 하고	
			있음	

	질 의		답 변
질의자	질의요지	답변자	답변요지
이연성 위 원		하 수 도 사업소장 천 병 기	- 참고로 삼천포하수처리량은 4,3000톤, 사천하수처리량 이 18,000톤이며,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계획인 곤양이 1,700톤, 서포 700톤, 곤명 600톤, 용현이 4,500톤임.
	■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각자치단체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지?■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꼭		■ 각 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는 해당 자치단 체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 음.
	설치해야하는 이유와 시급 성은 무엇인지?		■ 런던협약 96의정서가 2004년도부터 발효예정으로 이에 대비하여 하수슬러지 해양배출기준 강화 및 해양 환경보전법의 개정 등으로 하수슬러지의 적정처리가 불가피하며, 2003. 7. 1 이 후부터는 1일처리능력 1만 톤급 이상의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유기성슬러지는 직매립이 금지되어 처리시설 설치가 시급한 실정임.
진삼성	■ 삼천포처리장이 8톤, 사천		■ 슬러지처리시설용량을 현
위원	처리장이 6톤이 발생하는데 슬러지처리시설은 1일20톤 이면 앞으로 곤양, 서포 등 의 슬러지 처리도 가능한 지?	천 병 기	재 1일 20톤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설계용역시에 1일 25 톤으로 할 계획이며 앞으로 설치될 곤양, 서포 등의 하수 처리장의 슬러지 처리도 가 능함.

질 의		답 변		
질의자	질의요지	답변자	답변요지	
박종권	■ 현재 발생되는 슬러지를	하 수 도	■ 현재 톤당 28,000원정도	
위 원	위탁처리 한다는데 톤당 처	사업소장	이며 매일처리하지 않고 모	
	리비용은 얼마이며, 매일	천 병 기	아서 처리하고 있으며, 처	
	처리하는지? 또 해양투기지		리업체에서 동해안 울릉도	
	역은?		부근 공해상으로 알고 있음.	
	■ 슬러지처리시설후에는 부		■ 부유 잔재물에 대한 자원	
	유잔재물이 발생하지 않는지,		재활용관계는 실시설계 결과	
	자원 재활용이 가능한지?		에 따라 처리계획이며, 만일	
	만일 잔재물 발생시 처리대		처리후 잔재물 발생에 대비	
	책은		하여 용역 결과 업체가 선정	
			되면 완전처리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임.	

5. 토론 요지 : 원안가결 의견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없음

2004. 7. 30 (금) 제8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시나리오)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비 기채승인 안

사 천 시 의 회 (산업건설위원회)

-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은 최동식 의원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비 기채승인 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동 기채승인 안은 2004년 7월 6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8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를 대신하여 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 동 기채승인 안은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의 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중 국고부담분(70%)에 대하여 환경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 기금에서 우선 융자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원리금상환은 국고보조금으로 년차별로 상환하는 것으로서

○ 사천시 사등동 114-1번지상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내에

> 시설용량 1일 20톤 규모의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2004년도부터 2006년 8월까지 29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 총 29억원 중 투자재원별로는 국고융자금이 70%인 20억3천만원, 지방비가 30%인 8억7천만원으로 ○ 국고융자금은 환경부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융자금으로 우선 차입 사업시행하고

지방비는 도비 15%인 4억3천5백만원, 시비 15%인 4억3천5백만원을 각각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 년도별 투자계획은 2004년도 9억3천만원, 2005년도이후 19억7천만원으로서

2004년도 투자사업비 9억3천만원 중 국고융자금이 6억5천백만원, 지방비 2억7천9백만원(도비 1억3천9백만원, 시비 1억4천만원)으로

지방비 부담분 2억7천9백만원은 2004년도 당초예산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용역비로 확보하여

> 현재 타당성조사는 2004년 8월 4일을 준공기한으로 용역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의거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 동 사업은 투자사업비가 5억원이상으로서사전 년차별 재원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 예산의 효율적 배분으로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의거 예산확보는 물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나

○ 중앙정부의 사업 확정이 2004년 1월 17일

통보됨으로서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치 못하고

○ 2004년 3월20일 우리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자체심사를 거처

2004년 3월 30일자로 2004년도 수시분 지방채 발행계획을 경상남도지사에게 신청하여

2004년 6월 25일자로 승인을 득하였으므로 차후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하고

○ 금년도 국고융자금 6억5천1백만원에 대하여는 사업의 시급성과 중앙정부의 하수도사업 조기집행촉구와

2004년도 기채분에 대한 이자 1천8십7만원(6개월분)이 이미 국고보조금으로 우리시에 교부결정 및 교부 통지 되었으므로

○ 국고융자금에 대하여 기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을 거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 드린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